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4.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한 연 수		044-202-3575 044-202-3617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팀 장 담 당 자	한 상 균 김 병 도		044-202-3232 044-202-3239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담 당 자	임 영 훈 나 유 성		044-200-5770 044-200-579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용 재 조 성 훈		043-719-2051 043-719-2054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 장 담 당 자	안 석 박 종 복		044-201-8440 044-201-844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글로벌 상황변화에 즉각 순발력있게 대응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험 국가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외국인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물놀이 시설 방역지침과 관련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호텔·펜션 등의 소규모 수영장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련토록 하라고 문화체육 관광부 등에 주문하였다.

## 1 감염병 대응 조치 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관련 현황 및 대응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 정부는 감염확산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①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의 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6월 23일(화)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 또한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 (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 6월 23일 기준 도입시설은 75,407개소이며, 이용건수는 275만여 건
  - PASS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통합 앱 (SKT, KT, LG U+)으로, 회원가입 시 6자리 비밀번호(PIN 번호)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사 공통)
    - \* ① 앱 실행 및 로그인 → ② 'QR출입증' 클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④ QR코드 발급 완료 (15초 경과 시 만료, 클릭 한 번으로 재생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입항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 회사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 이에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 (22일 21시 기준)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되었다(23일 15시 기준).
-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22일 22시 이후), 해당 부두는 6.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하였다.
-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숭선검역을 시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 \* 승선검역 대상이며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 \*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
-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 \* 선원 하선 시 상륙허가서 필요, 선박 이동 시 세관 승인 추가 필요 ('ICE STREAM호' 선원이 상륙허가서 없이 인접 선박인 'ICE CRYSTAL호'로 이동하여 밀접 접촉자 추가 발생)
- □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 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확보**하는 한편,
  - \* 각 현장 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확보 추진
  -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 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











## 3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 (밀집 : 모이지 않기)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밀접 : 가까이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 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 \*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











- (밀폐 : 환기하기)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 □ 이와 함께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 6월 4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특히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 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 \* 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 방역지침 준수업체 지정
  -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4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 □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 \* 권장 휴가사용률 :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의 비율 (예 : 현원 100명, 권장 휴가사용률 10% ⇒ 휴가 사용가능 일수 50일 = 100×5일×10%)
    -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5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592개소, ▲실내 체육시설 1,0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46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소독·환기 미흡,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6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225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흡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남에서는 외국인 밀집시설 61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합동(141개반, 68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586개소가 영업 중지, 3,249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23)는 자녀 배웅, 지인과 약속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23일) 입소 145명, 퇴소 15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 외국인의 확진자 증가로 **외국인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 '고위험 국가\* 관리 책임관'을 지정,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가 격리자의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 6월 21일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 < 붙임 > 1. 전자출입명부 PASS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방법
  - 2.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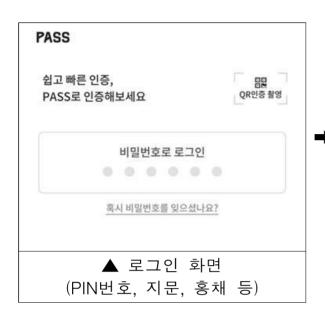






## 붙임1

# 전자출입명부 - PASS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방법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